

의안번호	제 39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

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5월 31일

#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 
번호

392

제출연월일 : 2016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「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」에 의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위·수탁 협약종료(2016.9.5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 : 충북문화관 운영관리

나. 추진계획

- 수탁기간 : 2016. 9. 6 ~ 2018. 9. 5(2년간)
  - ※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(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)
- 수탁기관 : 문화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
  - ※ 現 수탁기관 (재)충북문화재단 / 2012.9.6.~2016.9.5.(4년간)
- 수탁방법 : 공모선정
- 위탁사무 : 충북문화관 운영관리
  - 문화관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  -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자료 제공
  -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
  - 지역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
  -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,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
  -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일정
 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 수립 : '16. 6월
 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고 : '16. 7월
 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: '16. 7월
 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심의·선정 : '16. 8월
  -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16. 8월

## 3. 참고사항

-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 법령



##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 위탁 추진 계획(안)



문화체육관광국  
문화예술과

#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

도민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생활예술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충북문화관의 위·수탁 협약 종료(2016.9.5.)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는 계획임.

## 1 관련 근거

-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
  -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위탁 운영
-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
  - 위탁대상 사무 및 도의회 동의 규정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  - 기 민간위탁사무도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도의회 동의 조치

## 2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위·수탁 현황

- 수탁기간 : 2012. 9. 6 ~ 2016. 9. 5(4년간)
  - ※ 최초 '12.9.6~'14.9.5(2년), 연장 '14.9.6~'16.9.5(2년)
- 수탁기관 : (재)충북문화재단
- 위탁시설 : 부지 9,512㎡, 건물 756㎡
  - 문화의 집(407㎡) : 문학 상시전시, 북카페
  - 숲속갤러리(325㎡) : 회화갤러리, 기획전시실, 사무실
  - 경비실(24㎡) :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인력 근무
  - 야외정원 : 소규모 공영장, 휴게쉼터, 주차장 등
- 운영비 : 271,100천원('16년)

○ 위탁사무 : 총북문화관 운영관리

- 문화관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-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자료 제공
-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
- 지역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,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
-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,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## 3 총북문화관 운영관리 위탁 추진 일정

① 총북문화관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6. 6월

② 총북문화관 민간위탁 계획 수립 : '16. 6월

○ 위탁방법, 위탁기간,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

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: '16. 6월

○ 구성인원 : 7명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
· 당 연 직 : 3명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)

· 위 촉 직 : 4명(관련분야 외부전문가)

④ 총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고 : '16. 7월

⑤ 수탁기관 심의·선정 : '16. 8월

○ 심의사항 : 수탁자의 적격성, 사업수행능력, 재정운영 등 평가

○ 운영방식 : 현장(필요시) 및 서면평가 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

⑥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16. 8월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■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14조

**제14조(위탁)** ① 문화관을 운영·관리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하여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 및 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르며,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,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12. 10. 10>

### 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 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, 제6조

**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**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  
**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**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<개정 2015. 3. 27>

④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(이하도"라 한다)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<개정 2015. 3. 27>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 등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5. 3. 27>

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보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 3. 27>